

4. 물류분야 에너지 사용량 또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관한 감축목표 설정 및 달성을
  5.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에 대한 효과분석 및 정부 보고
- ② 법 제60조의3제1항에 따라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60조의7제1항에 따른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심사 대행기관(이하 "지정심사대행기관"이라 한다)에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.<[개정 2015. 12. 31.](#)>
1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)
  2. 사업자등록증
  3. 제1항 각 호의 평가항목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보고서 및 입증자료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
-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자에게 별지 제17호서식의 지정증을 발급한다.
-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적합하게 유지하고 있는지를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.<[개정 2016. 9. 12.](#)>
-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에 필요한 평가항목, 평가지표, 평가방법, 지정절차 및 지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[[본조신설 2014. 2. 7.](#)]

[[제14조의2에서 이동 <2019. 1. 11.>](#)]

**제14조의8(지정심사대행기관의 조직 · 운영)** 법 제60조의7제1항에 따라 지정심사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심사 · 점검에 필요한 전담조직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.

[[본조신설 2015. 12. 31.](#)]

[[제14조의3에서 이동 <2019. 1. 11.>](#)]

**제15조(수수료)** ① 법 제6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는 1건당 2만원으로 한다.

② 법 제6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수수료는 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.<[개정 2015. 12. 31., 2016. 9. 12., 2021. 4. 20.](#)>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·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.

④ 그 밖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[[전문개정 2014. 2. 7.](#)]

**제16조** 삭제 <[2023. 7. 10.](#)>

**부칙** <제1531호, 2025. 10. 31.>(정부조직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)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